

등록번호	복지정책과-228
등록일자	2015. 1. 6.
결재일자	2015. 1. 6.
공개구분	대시민공개

★주무관	복지행정팀장	복지정책과장	복지문화국장
조원석	최우순	이정희	01/06 이태묵
협 조			

2015년도 업무추진비(시책 · 기관 · 부서) 집행계획



서 대 문 구
복지정책과

2015년도 업무추진비(시책·기관·부서) 집행계획

2015년도 지역사회복지 자원관리 등에 따른 업무추진비(기관, 시책, 부서)를 적정하게 집행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국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함

I 예산편성

□ 예산편성 현황

(단위:천원)

구분	세부사업		예산현액	비고
계			44,809	
시책 추진 업무추진비	1	정담은푸드마켓 운영지원	1,167	
	2	효율적자원개발을 통한 틈새계층 지원	2,200	
	3	공공복지전달체계 개선	648	
	4	사회복지의날 행사	648	
	5	보훈회관 및 단체등 지원	450	
	6	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	2,650	
	7	지역사회복지연계강화사업	450	
	8	지역사회복지자원관리	9,656	국 6,480 과 1,232 복지자원 1,944
	9	동 복지 허브화	3,276	
	10	동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	6,720	
	11	자원봉사센터 운영	9,444	
기관 운영 업무추진비	12	기관인력운영비	3,300	
부서 운영 업무추진비	13	부서인력운영비	4,200	

II 주요 집행기준 및 집행방법

□ 관련근거

-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
-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

□ 집행대상 주요직무활동

시책추진업무추진비, 기관운영업무추진비

- 불우소외 계층 및 이주민에 대한 격려 및 지원
- 시책또는지역홍보
 - 다른기관 . 단체와의 협약식에 따른 기념품 증정 또는 교환
 - 내방객(일반민원인은 제외)에 대한 의례적인 수준의 기념품 지급
 - 시책사업 홍보를 위한 언론관계자 간담회 개최시 식사제공
- 학술 . 문화예술 . 체육활동 유공자 등에 대한 격려 및 지원
 - 공연단 등이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 구역내에서 공연 또는 행사를 하는 경우 현장종사자에 대한 해당 지방자치단체 명의를 격려금품 지급 및 식사 제공
 - 지역사회를 위하여 대가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고 자원봉사 활동을 하는 자원봉사자 . 단체 . 센터에 대한 격려금품 지급 및 식사제공

◆ 업무추진비 집행대상 자원봉사자·단체·센터의 범위

- 1) 관할 행정구역 내의 농·어촌 일손돕기에 참여하는 자원봉사자, 단체, 센터
- 2) 관할행정구역내에서 장애인, 독거노인, 생활보호대상자 등 불우소외 계층에 대한 봉사활동에 종사하는자(개인,단체,센터)에 대한 격려금품지급 또는 식사제공

- 업무추진을 위한 각종회의, 간담회, 행사
- 현업(현장)부서 근무자에 대한 격려 및 지원
- 소속 상근직원에게 대한 격려 및 지원

- **업무추진 유관기관 협조**
- **직무수행과 관련된 통상적인 경비**
 - 내방객에게 제공하는 음료, 다과재료 등의 구입비
- **그밖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대상, 방법,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조례 또는 법령에 미리 정하여진 경우로서 예산집행이 필요한 경우**
- **축의, 부의금품의 집행**
 -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서만 집행하되, 한도액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건당 5만원 초과 불가
 - 소속 상근직원에 대한 축의, 부의금은 해당부서 소속 구성원을 대상으로 집행하되 동일 관서 내 실, 국 또는 실, 과, 소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업무가 서로 연계되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집행
 - 본청, 제1관서, 읍, 면, 동 등 관서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업무가 서로 연계되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축의, 부의금 집행

부서운영업무추진비

- **부서운영 공통경비이므로 실, 과, 소장의 활동경비로 사용불가**
- **실, 과, 소 전체 직원의 사기양양 경비로 사용**
- **부서의 기본운영경비**
- **접대성 경비 집행 또는 물품의 구매시 원칙적으로 신용카드 사용**
- **간담회 등 접대비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인 1회당 4만원이하 범위에서 집행 다만, 행사성격 등 불가피한 경우 4만원 초과 집행가능**
- **접대성 경비를 집행하고자 하는 경우 사용용도 명확화**
 - 집행목적, 일시, 장소, 집행대상 등을 증빙서류에 기재
 - 건당 50만원 이상의 경우 주된 상대방의 소속 또는 주소 및 성명 증빙서류에 기재
- **현금지출은 격려금, 조의금, 축의금 등 현금 집행이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지출이 가능**
 - 개산급으로 전달자에게 현금을 지급할 경우 전달자의 영수증 첨부

- 현금으로 최종수요자에게 제출한 경우 최종수요자의 영수증 첨부함
다만, 상대방에게 영수증을 받을 수 없거나 부적절한 경우에는
지급목적, 지급일시, 지급대상자 등이 나타나는 집행내역서를 현금
전달자 등으로부터 징구

Ⅲ 세부집행계획

□ 사업별 세부집행계획

(단위:천원)

세부사업명	사업내용	집행일정	소요예산	비고
계			44,809	
정담은푸드마켓 운영	푸드마켓자원발굴등	매월	1,167	10% 예산절감 감안하여 집행
효율적 자원개발을 통한 틈새계층 지원	따뜻한 겨울나기 행사 및 나눔운동 행사 등	분기별	2,200	
공공복지전달체계 개선	협력단 운영	분기별	648	
사회복지의 날 행사	사회복지의날행사추진	1,7월	648	
보훈회관 및 단체지원 등	국가유공자 및 유족수송 등	6월	450	
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	협의체 운영	분기별	2,650	
지역사회복지연계강화사업	1:1결연사업	분기별	450	
지역사회복지자원관리	국및과업무추진, 복지자 원발굴및관리, 사회복지 협의체운영	매월	9,656	
동 복지 허브화	동복지허브화추진간담회	분기별	3,276	
동지역사회복지 협의체운영	결연자발굴및연결, 나눔 행사등추진	분기별	6,720	
자원봉사센터	캠프운영, 단체 발대식, 간담회등	매월	9,444	
기관인력운영비	국 기관운영	매월	3,300	
부서인력운영비	부서 운영	매월	4,200	

IV 행정사항

-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및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준수
- 매분기 초 또는 사업시작 전 정산서 등 첨부하여 일상경비 교부 요청
- 잔액발생시 2016년 2월 일상경비 잔액 반납